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734호 2021. 7. 8.(목)

입법예고

- 사천시 공고 제871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
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----- 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/ ☎ 831-2215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734호

사천시 공고 제2021 - 871호

「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7월 8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굴과제로 선정된 규칙을 개정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조제1항제4호)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

3. 의견제출

사 천 시 공 보

제734호

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우주항공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>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보내실 곳 : 사천시장(참조 : 우주항공과장)

(우편번호: 52539 / 주소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

전화번호: 055)831-3057, 팩스번호: 055)831-6044]

사 천 시 공 보

제734호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

성명(단체명):

주 소:

생 년 월 일:

전 화 번 호:

규칙안 내용	의 견	비 고

사 천 시 공 보

제734호

사천시 규칙 제 호

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제5조제1항의 구비서류를 허위”를 “제5조의 구비서류를 거짓으”로 한다.

4. 그 밖에 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

제6조의 제목 “(대상업체선정 통보)”를 “(대상업체 선정 통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제5조제1항”을 “제5조”로, “검토·심의”를 “검토·심의하여 대상업체를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자대상업체) ① 「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 따른 용자대상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제5조제1항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업체</u>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제6조(<u>대상업체선정 통보</u>) 시장은 <u>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업체</u> 중에서 적격여부를 <u>검토·심의</u> 선정한 후 이를 취급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</p>	<p>제2조(용자대상업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 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제5조의 구비서류를 거짓으</u>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<u>대상업체 선정 통보</u>) --- <u>제5조</u>----- ----- <u>검토·심의</u> <u>하여 대상업체를</u> ----- -----</p>

<p>다.</p> <p>제7조(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--.</p> <p>제7조(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---	---

사 천 시 공 보

제734호

관 련 법 규

□ 중소기업기본법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제11조(용자대상업체) 제10조에 따른 용자지원대상업체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사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 한다.

제14조(용자계획의 공고 및 용자신청등)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용자금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시장에게 용자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 용자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